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5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2. 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심의회 구성의 조문 정비(안 제7조제2항)
- 나.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, 부위원장 변경(안 제7조제3항)
- 다. 정보공개심의회 간사, 서기 지정 신설(안 제7조제5항)
- 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표현 등 용어 정비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
- (2)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, 제14조
- (3)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1. 10. 8. ~ 10. 28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의하여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하고, “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라 한다)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군”을 “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에”를 각각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의하여”를 각각 “따라”로 하며,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”을 “해당 정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“사본·복제물을”을 “해당 정보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군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부군수로”를 “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”로 하고, “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.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본문 중 “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”를 “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임자”를 “전임 위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4조에 의하여 <u>대구광역시 달성군</u> (이하 “군” 라 한다)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<u>대구광역시 달성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정보공개의 원칙) ① <u>군</u> 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.	제2조(정보공개의 원칙) ① <u>달성군</u> 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 다음 각 호의 <u>1</u> 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<u>의하여</u>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----- ----- <u>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1. <u>당해</u> 연도의 주요 업무계획	1. <u>해당</u> -----
2. <u>당해</u> 연도의 예산·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	2. <u>해당</u> ----- -----
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② 군수는	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②-----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
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
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
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
공개하여야 한다.

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
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공개방법) ① 행정정보의
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
서 열람·시청하게 하거나 사
본·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
방법 등에 의한다.

제5조(공개방법) ③ 공개 청구된
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
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
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
본·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
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
교부할 수 있다.

제5조(공개방법) ④ 제3항의 규정에
의하여 사본·복제물을 일정 기간
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
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
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공개심

어느 하나에

따라

제5조(공 개 방 법) ① 행정정보의
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
“영”이라 한다) 제 14조제1항
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
일시 및 장소에서 한다.

제5조(공 개 방 법) ③ 해당 정보를

제5조(공 개 방 법) ④ 따라 해당 정보를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
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

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.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
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.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
② 심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 하되, 그 중 3분의 2는 군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 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
③ -----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-----
-----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
④ -----
-----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----- 전임 위원 -----

<신 설>

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·구성)

<u>제8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 <u>1.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</u> <u>2.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</u> <u>3.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 제12조(위원의 해촉) 1. 질병이나 <u>기타의</u>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제14조(다른 제도와의 관계)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<u>의하여</u> 열람·공고·고시·예고 또는 등본·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<u>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.</u> <u>제8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</u> 제12조(위원의 해촉) 1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제14조(다른 제도와의 관계) ① ----- <u>따라</u>
--	---

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국가기관 등”이라 한다)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 여건,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
-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-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21. 12. 23.] 제12조제1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제4항

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
제14조(정보공개 방법)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.

1. 문서·도면·사진 등: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
 2. 필름·테이프 등: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제공
 3. 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제공
 4.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등: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
 5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: 해당 정보의 소재(所在) 안내
-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·출력물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.
- ③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6. 22.>
- 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, 사생활의 비밀,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 <개정 2021. 6. 22.>
- [시행일 : 2021. 12. 23.] 제14조제3항, 제14조제4항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